의안번호	제 785 호
의 결	년 월 일
연월일	(제392회)

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오영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5

발의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
발 의 자 : 오영탁, 임영은, 이옥규,

박상돈, 심기보, 육미선,

박우양

1. 제정이유

○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 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시·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 등에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생활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라. 입법예고 : 2021. 6. 16. ~ 2021. 6. 26.

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스포츠클럽"이란 주사무소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 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2. "생활체육지도자"란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 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 람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스포츠클럽 지원)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·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.
 - 1.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

- 2.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
- 3.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
- 4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)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
 - 2.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
 - 3.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
 - 4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
- 제7조(포상)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큰 법인·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생활체육진흥법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생활체육"이란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.
 - 2. "생활체육지도자"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생활체육종목단체"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 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4. "체육동호인조직"이란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하다.
 - 5. "스포츠클럽"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9조(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·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0조(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

제4조(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 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
- 2.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
- 3.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
- 4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O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·군에 대한 지원
- O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

3. 관련조문

- 안 제5조(스포츠클럽 지원)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·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
 - 2.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
 - 3.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
 - 4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O 안 제6조(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)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
 - 2.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
 - 3.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

4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미첨부 근거 규정

O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 제1호

5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는 지원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선언적·권고적 형 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